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446-13



국민연금재정계산 보고서 2

2023 국민연금재정계산

#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2023. 11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 머 리 말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시 연금급여 수준을 10%p 하향하고,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이는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재정계산을 법제화한 것은 장기 재정균형 목표를 위한 제도 조정이 계속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003년에 처음으로 1차 재정계산이 시행된 이후 2018년까지 4차례의 재정계산이 있었다. 재정계산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번 5차 재정계산 과정에서 산출된 재정추계 결과, 적립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4차 재정추계 결과)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지고 부과방식 비용률은 2060년 기준으로 26.8%에서 29.8%로 높아졌다. 5차 재정계산 결과가 3차와 4차 재정계산 결과보다 재정이 악화된 것은 국내외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심화 등 인구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국민연금 재정 불안의 근본 원인은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한 구조에 기인한다. 재정 불안 요인 중 인구 요인에 의한 것은 통제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제도적으로 장기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재정계산위원회의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계산기간(2023년~2093년) 중에 적립기금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2023년 현재 20세인 가입자의 평균 수명기간 동안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함)이 존재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연금보험료율, 연금지급개시연령, 기금운용수익률)의 조합을 통하여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수단 조합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수많은 정책 대안 중에서 대표적 랜드마크를 세운 것이다. 단일 방안을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시하지 않은 것은 각 정책수단 별로 세대간·세대내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각 대안별 장·단점을 국민이 판단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시하는 것이 재정계산 보고서가 해야 할 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책수단 조합이 보여주는 행간을 읽으면, 재정계산 보고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장기균형으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하나의 정책수단만으로는 현재의 재정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는 재정안정화 방안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입제도 및 수급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노후소득보장에 중요한 기초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원회와 함께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15명의 정부 및 민간위원이 20여 차례의 국민연금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한 연구발표, 쟁점토론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재정계산위원회의 연구과제는 본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총 16개 과제를 분담하여 작성한 후 각 과제별 수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각 과제별 수행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지만, 최종보고서와 연구과제별 보고서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수행보고서는 토론을 유도하는 발제와 같은 성격인데 비하여, 최종보고서는 전체 위원의 논의과정을 거쳐 작성된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서 가능하였다. 먼저 본 업무의 주부 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이스란 연금정책관, 박재만 연금정책과장, 김성철 서기관 등 연금정책관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다. 또한 본 위원회의 운영지원 책임을 맡은 국민연금연구원의 권문일 원장, 성혜영 연금제도연구실장, 정인영 연금제도팀장, 유현경 전문연구원 등 국민연금연구원에 감사한다. 본 보고서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3년 11월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김 용 하

## < 목 차 >

제1장 서론 .....	3
1. 재정계산의 의의와 경과 .....	3
2.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과제 .....	4
제2장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원칙 .....	9
1. 노후소득보장 여건 .....	9
2. 노후소득보장 목표 .....	14
3.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 .....	18
제3장 재정안정화 방안 .....	23
1. 재정진단 .....	23
2. 재정안정화 방안 .....	27
제4장 노후소득보장 방안 .....	39
1. 급여제도 개선 .....	39
2. 가입제도 개선 .....	47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54
보완과제 .....	59
보완과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	59
부록 .....	61

## < 표 차례 >

<표 1>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	12
<표 2> 한국의 미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	12
<표 3> 근로연령층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	13
<표 4> 상대빈곤율 연도별 추이 .....	14
<표 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가입자 현황(2022년 12월 기준) ...	15
<표 6>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연도별 급여수준 .....	16
<표 7>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수급 금액별 연금수급자 수 (2022년 12월 기준) .....	17
<표 8> 재정수지전망 .....	24
<표 9> 부과방식비용률 및 GDP 대비 급여지출 추이 .....	25
<표 10> 적립기금 유지를 위한 필요보험료율 .....	26
<표 11> 보험료율 12% 단계적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	28
<표 12>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	28
<표 13> 보험료율 18% 단계적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	29
<표 14>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	30
<표 15> 기금투자 수익률 제고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	31
<표 16> 보험료율 12% 인상과 연금 지급개시연령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	31
<표 17> 보험료율 12% 인상과 기금투자수익률 상향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	32
<표 18> 보험료율 12% 인상과 추가 재정안정화 방안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	32
<표 19> 보험료율 15% 인상과 연금 지급개시연령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	33
<표 20> 보험료율 15% 인상과 기금투자수익률 상향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	33
<표 21> 보험료율 15% 인상과 추가 재정안정화 방안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	34

<표 22> 보험료율 18% 인상과 연금 지급개시연령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	35
<표 23> 보험료율 18% 인상과 기금투자수익률 상향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	35
<표 24> 보험료율 18% 인상과 추가 재정안정화 방안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	36
<표 25> 소득계층별 법정 소득대체율 .....	39
<표 26>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재정전망 .....	42
<표 27> 소득구간별 감액산식 및 소득구간별 재직자 현황 .....	43
<표 28>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급여수준 .....	45
<표 29>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소득대체율 .....	45
<표 30> 국민연금 수급연령 조정 일정 .....	47

## < 그림 차례 >

[그림 1]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	9
[그림 2]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	9
[그림 3]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	10
[그림 4] OECD 국가별 총부양비 비교 .....	10
[그림 5] OECD 주요국의 30년간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0) .....	11
[그림 6]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 .....	15
[그림 7] 재정수지전망 .....	23
[그림 8] 부과방식비용률 및 GDP 대비 급여지출 추이 .....	26

# 제1장 서론



## 제1장 서론

### 1. 재정계산의 의의와 경과

#### 가. 재정계산 추진 근거 및 취지

##### □ 추진근거

-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재정계산 제도가 도입됨
- 국민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

##### □ 제도의 취지

- 인구 및 경제 환경의 변화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기여기반이나 장기적 재정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안정화 및 기금운용 계획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도입

#### 나. 재정계산 추진체계 및 경과

##### □ 추진체계

-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로 3개 위원회 구성
  - (재정계산기획지원단) 각 위원회 및 재정계산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설치·운영함

□ 경과

○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 (기능)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이하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추계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검토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5인(간사 별도)으로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당연직 정부위원 2인(국장급), 민간위원 12인, 간사
- (편집위원회의 발족) 민간위원과 간사 포함 8인
- (추진경과) 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2022년 11월 28일 발족하여 재정계산위원회 회의 22회, 편집위원회 회의 3회,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와의 합동 회의 1회,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와 합동 회의 2회 개최

## 2.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과제

### 가. 제4차 재정계산위원회의 한계

- 4차 재정계산에서는 70년 후 적립배율 1배의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2개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연금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함
- 가 안) 현행 국민연금법에 2028년까지 예정된 소득대체율 40% 하향을 중단하여 45%로 인상하고 2019년부터 보험료율을 11%로 인상, 이후 3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필요보험료율이 18%를 넘어설 경우 일반재정 투입
- 나 안) 재정목표인 추계기간 70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하기 위해 1단계('19~'29)로 13.5%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2단계('30~'88)로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기대여명계수 도입으로 3.7%p의 보험료 인상 효과 확보. 필요 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가 보험료 인상

## 나.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과제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2003년 제1차 재정계산 시, 2070년 말 적립배율 2배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이 11.85%로 제시되었으나 이후 20년간 보험료율은 9%로 정체되어 있으며, 이후 재정계산마다 필요보험료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있음
  - 제5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현행 제도 유지 시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서는 2042년 수지적자 발생, 2057년 기금 소진으로 예측되었으므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
    -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진 원인은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경기 둔화가 재정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있음
  - 따라서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와 급여-재정 간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절실한 시점임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과 함께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 2018년 51만 원에서 2022년 58.6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60만 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 73%를 차지함
    -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 수급자 비율은 2025년 53.2%에서 2093년 88.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25년 약 20년에서 2093년에 약 28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됨
  -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국민연금의 낮은 도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인한 실질 가입기간 확보 제약과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기초연금 도입에도 저소득 노인의 빈곤해소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
- 따라서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수준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 기초연금 역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제2장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 원칙



## 제2장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 원칙

### 1. 노후소득보장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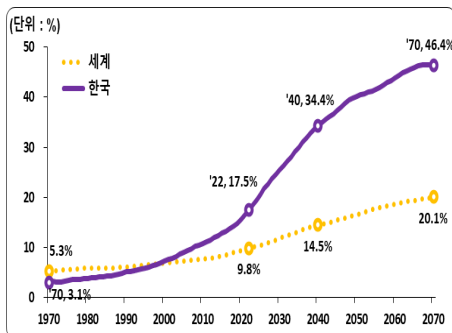
#### 가. 사회적 여건

##### □ 고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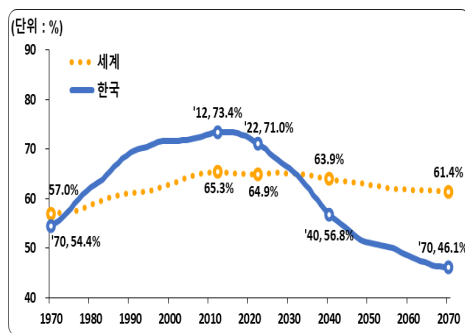
-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결과, 우리나라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5%에서 2070년 46.4%로 증가할 전망. 세계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9.8%에서 2070년 20.1%로 증가
-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12년(73.4%)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22년 71.0%, 2040년 56.8%, 2070년에는 46.1%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중위연령은 2022년 45.0세에서 2070년 62.2세로 높아질 전망
  - 세계 인구 중위연령은 2022년 30.2세에서 2070년 38.8세
- 2050년 65세 노인인구는 1,900만 명(40.1%)으로 예상되며 2020년 총 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 당 부양 인구)는 38.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2070년(116.8 명)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보도자료. 통계청.

[그림 1]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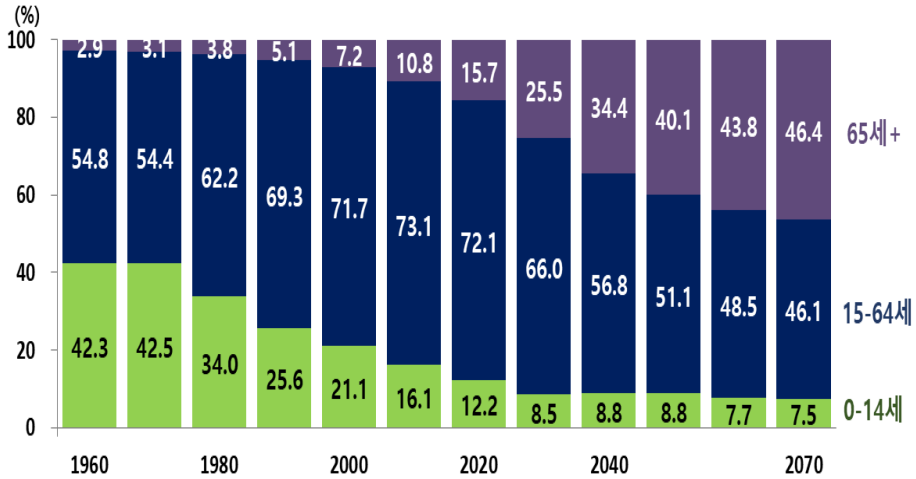


[그림 2]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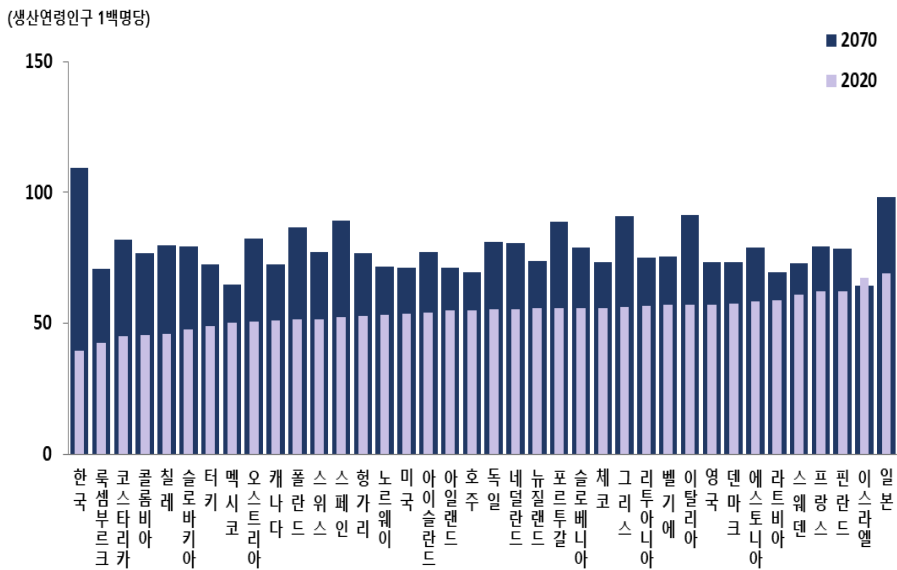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

[그림 3]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그림 4] OECD 국가별 총부양비 비교



자료: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년~2070년.

□ 저출산 심화

- 저출산의 심화로 인해 2050년 이후의 인구구조 전망도 밝지 않음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인 유일한 국가, 지난 30년간 가장 가파르게 출산율 감소\*\*(OECD,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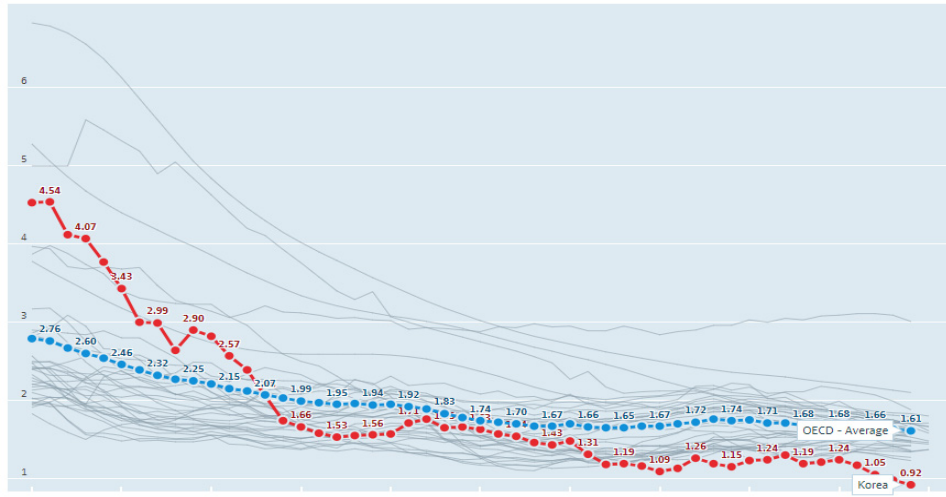
\* 2021년 기준 한국 0.81 미국 1.66, 일본 1.30, OECD 평균 1.58

\*\* 1980~2021년간 주요 OECD 회원국 출산율 감소폭(명): 한국(△2.01), 일본(△0.45), 미국(△0.18), 영국(△0.37), 스웨덴(△0.01) 등

\*\*\* 출처: OECD(2021). Fertility rates(indicator). OECD data.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신생아 수는 24만 3천 명에서 2035년 32만 4천 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55년에는 20만 명 미만(약 19만 9천 명)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통계청, 2021)  
 - 이에 따른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3명에서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한 이후 증가하여 2046년 1.21명 수준에 도달할 것

[그림 5] OECD 주요국의 30년간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0)



주) 한국(빨간색)과 OECD평균값(파란색)

자료: OECD(2021). Fertility rates(indicator). OECD data

## 나. 경제적 여건

### □ 경제성장 둔화

- 2017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노동력과 소비를 늘려 고성장을 이끌던 인구보너스 시기가 종료되고 저성장시대 진입
- 국내 총생산 실질성장률 1960-1980년대 10% 안팎으로 빠르게 성장, 1990년대 6.5%대, 2000년대 3~4%대로 성장세 둔화, 2020년 마이너스 성장

〈표 1〉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9.1	6.8	2.8	2.9	3.2	2.9	2.2	-0.7	4.3	2.6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2, 2023.07.20., 주요지표(연간지표)

주: 1) 경제성장률=((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전년도 실질 GDP) × 100

2) 실질 GDP는 2015년 기준이며 2022년은 잠정치

### □ 미래 경제활동 참가율

- 미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2080년 75.9%와 73.0%까지 증가하고 이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표 2〉 한국의 미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68.6	71.9	75.5	75.0	74.2	74.9	75.9	75.5	75.7
고용률(%) (15~64세)	65.9	69.2	72.7	72.4	71.4	72.0	73.0	72.7	72.7

자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 기준

### □ 낮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 근로연령층 고용률은 66.6%로 OECD 국가의 68.4%보다 약간 낮으며 OECD를 100으로 설정할 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67.7, 1인당 노동생산성은 79.1로 OECD 평균보다 낮음

〈표 3〉 근로연령층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국가	고용률(%)	1인당 노동생산성	1시간당 노동생산성
대한민국	66.6	79.1	67.7
OECD 평균	67.1	100	100

자료: OECD(2020). OECD Economic Surveys Korea. OECD.

#### □ 노동시장 양극화

- 고임금·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저학력·저숙련 일자리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계속
-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04년 약 177만 원에서 2022년 약 348만 원으로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동일시기 약 115만 원에서 약 188만 원으로 임금 격차\* 증가

\* 2004년 기준 비정규직 임금은 대략 65% 수준이었으나 2022년 54%로 감소

\*\*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증감

- 특히, 여성과 청년층 그리고 노인층에서 비정규·불안정 노동으로 근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는 결국 노후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OECD.

#### 다. 노인빈곤율

- OECD 기준으로 볼 때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최근 몇 년간 개선의 추세가 뚜렷함<sup>1)</sup>

- OECD 국가 66세 이상 노인빈곤율 평균은 13.1%이며,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로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임(OECD, 2021)

\* OECD (2021). Pensions at a Glance 2021: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1) 노인 빈곤을 소득뿐 아니라 자산을 고려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국민연금연구원 2018, 노인의 소득-자산 구성과 수준에 관한 연구 참조)

- 2012년과 2021년 사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2012년 45.4%에서 2021년 37.6%로 7.8%p 큰 폭으로 감소함
- 같은 기간 전체 인구빈곤율은 2012년 18.3%에서 2021년 15.1%로 3.2%p 감소하였고, 노인빈곤율 감소폭 보다 낮음

〈표 4〉 상대빈곤율 연도별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빈곤율 (%)	18.3	18.4	18.2	17.5	17.6	17.3	16.7	16.3	15.3	15.1
노인빈곤율 (%)	45.4	46.3	44.5	43.2	43.6	42.3	42.0	41.4	38.9	37.6

자료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각 연도

주: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임

## 2. 노후소득보장 목표

### 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현황

#### □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외형 구축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0층에 기초연금, 1층에 국민연금, 2층에 퇴직연금의 다층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그 외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 주택·농지연금, 퇴직 연금의 한 종류인 개인형 IRP 등을 갖추고 있음
-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된 이후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으며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기초연금으로 발전함

[그림 6]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

3층	개인연금, 주택·농지연금, 개인형 IRP 등			
2층	퇴직금/퇴직연금	특수직역 연금		
1층	국민연금			
0층	기초연금			
대상	근로자	자영자	기타	공무원 등

## □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 국민연금은 2022년 말 기준 가입자는 약 2,250만 명으로 사업장 가입자 65.7%, 지역가입자 30.4%이며, 수급자는 664만 명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가입자 비중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임

〈표 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가입자 현황(2022년 12월 기준)

(단위: 명)

	계(비중)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계	19,433,625(100%)	14,785,761	3,781,550	365,487	500,827
33만원 ~ 40만원 미만	213,250(1.1%)	129,901	72,532	7,295	3,522
40만원~100만원 미만	1,747,253(9.0%)	564,728	1,097,970	1,651	82,904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251,678(27.0%)	2,677,501	1,945,658	323,755	304,76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026,948(25.9%)	4,580,663	360,254	19,549	66,48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586,943(13.3%)	2,425,599	136,829	5,745	18,77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538,888(7.9%)	1,445,572	80,375	3,761	9,180
500만원 이상~550만원 미만	559,364(2.9%)	508,441	41,409	2,692	6,822
550만원 이상	2,509,301(12.9%)	2,453,356	46,523	1,039	8,383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 2022.12」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소득신고자 기준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2022년 말 기준 수급자수는 624만 명 실제 수급률은 67.4%임

- 같은 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수는 65세 이상 노인 중 291만 명이며 동시 수급률은 31.5%임
- 퇴직연금에는 2021년 684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 1,196만 명 중 53.3%임
- 같은 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총 397,270계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4.3%

□ 급여수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7년 연금개혁을 통해 2008년 60%에서 50%로,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낮추어 2028년까지 4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중
-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특례·분할연금 제외) 2018년 51만 원에서 2022년 58.6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기초연금액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에서 2023년 32.3만 원으로 증가함

〈표 6〉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연도별 급여수준

연도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노령연금 수급자 중 20년 이상 가입자 비율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상승률 (전년도 대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특례·분할 연금 제외	20년 이상 가입자			
2018	509,909 원	911,369 원	9.0%	1.9%	250,000
2019	527,075 원	921,763 원	10.9%	3.4%	(소득 하위 20% 이하) 300,000 (20~70%) 253,750
2020	541,033 원	930,890 원	13.1%	2.6%	(소득 하위 40% 이하) 300,000 (40~70%) 245,760
2021	556,502 원	944,639 원	15.4%	2.9%	300,000
2022	586,112 원	981,140 원	17.9%	5.3%	323,180

\* 〈참고〉 국민연금연구원 2021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 9차 본조사 결과 1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는 124만 3천 원(부부 198만 7천 원), 적정 생활비는 177만 3천 원(부부 277만 원)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월 수급 금액별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은 2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인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4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임

〈표 7〉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수급 금액별 연금수급자 수(2022년 12월 기준)

(단위: 명)

	노령연금		
	소계(비중)	남자	여자
계	5,312,359(100%)	3,314,205	1,998,154
20만원 미만	745,894(14.0%)	333,792	412,102
20만원~40만원 미만	2,078,794(39.1%)	975,292	1,103,502
40만원~60만원 미만	1,057,916(19.9%)	711,809	346,107
60만원~80만원 미만	540,818(10.2%)	450,539	90,279
80만원~100만원 미만	321,788(6.1%)	295,282	26,506
100만원~130만원 미만	297,919(5.6%)	284,798	13,121
130만원~160만원 미만	168,045(3.2%)	163,650	4,395
160만원~200만원 미만	95,775(1.8%)	93,711	2,064
200만원 이상	5,410(0.1%)	5,332	78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 2022.12」

## 나. 노후소득보장 목표

- 국민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1인당 평균연금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고, 국민연금의 실질 급여도 낮은 수준이며,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늦은 도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실질 가입기간이 길지 않고, 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안정적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노인인구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미수급자와 저연금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계층의 빈곤 해소에는 미흡한 상황임
  -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이후 시행되고 있으나, 전체 대상 근로자의 절반만 가입하고 있고,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률도 저조하여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충적 소득보장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
  -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크레딧(출산, 군복무) 강화 및 가입연령 상한 연장 등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급여수준 향상, 영세 자영업자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연금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상·하한의 합리적 조정,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
- 아울러,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역할을 정립하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
  - 기초연금은 급여 인상과 국민연금 보장수준 등을 감안하여 노후 빈곤 해소에 적합한 역할을 검토하고,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함
-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소득보장목표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감안한 미래 노후소득보장의 비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 3.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

-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장기재정균형
  -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1항)고 명시

- 또한,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지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3항)고 명시하고 있음
-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정목표를 설정하여 왔으나, 구체적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과거 4차례의 재정계산 과정에서 제시된 재정목표를 보면, 1차 재정계산 시에는 적립배율 2배, 2차 재정계산에는 적립배율 2배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수준, 3차 재정계산에는 적립배율 2배와 부과방식 연착륙의 복수안, 4차 재정계산에서는 적립배율 1배를 제안했음
  - 과거 4차례의 재정계산 과정에서 제시된 재정목표는 대체로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간(추계시점으로부터 70년간) 동안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정목표를 견지하여 왔음
  - 5차 재정계산에서의 재정목표는 지난 4차례의 재정계산에서 제시된 재정목표를 계승하여 “재정계산기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로 제시함
- OECD 대부분 국가에서는 적립기금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재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적립기금을 일정수준으로 확보하여 장래의 급여지출 급증에 대비하여 왔음
  - 국민연금법 제정 시의 적립금 유지 방침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 급속히 늘어날 급여 지출을 사전에 적립하여 미래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었으며, 국민연금은 이러한 취지에서 제1차 및 제2차 연금개혁을 진행하였음
  - 제도 도입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초저출산·초고령화의 진전으로 국

민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어, 미래세대에게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 제5차 재정계산에서는 과거 재정계산 과정에서 제시된 재정목표(재정계산 기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재정목표와 재정안정화 방안의 괴리를 최소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
  - 국민연금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되면, 국민연금의 추계기간(70년)에는 적립기금을 보유할 수 있고,
  - 현재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수명 도달 시까지는 국민연금을 안정하게 수급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시현함으로써,
  - 제시되는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재정안정화 방안은 궁극적으로 재정 추계기간 동안 적립기금이 유지되도록 하여, 청년세대를 포함한 현재의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함

## 제3장 재정안정화 방안



## 제3장 재정안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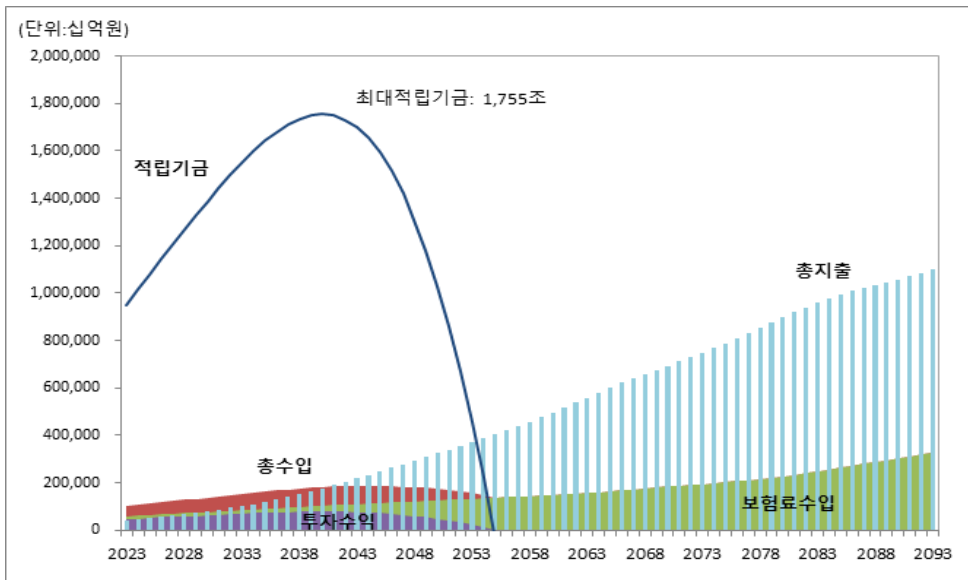
### 1. 재정진단

#### 가. 국민연금재정 추이

##### □ 재정전망과 수지구조

-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직전 연도인 2040년에 최고 1,755조원(1,253조원, 2023년 불변가)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짐
  - 4차 재정계산에서는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

[그림 7] 재정수지전망



〈표 8〉 재정수지전망

(단위 : 경상가, 십억원, %)

연도	적립 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23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23	950,344	101,735	58,633	43,102	40,341	39,521	61,394	22.0	9.0	950,344
2025	1,078,065	114,368	63,344	51,023	50,380	49,494	63,987	20.1	9.0	1,036,202
2030	1,387,291	137,489	76,019	61,470	79,227	78,152	58,262	16.8	9.0	1,207,720
2035	1,642,021	162,775	89,116	73,658	118,324	117,020	44,451	13.5	9.0	1,294,722
2040	1,754,934	182,144	103,530	78,614	176,850	175,274	5,293	9.9	9.0	1,253,308
2041	1,748,949	183,700	105,645	78,055	189,686	188,048	-5,985	9.3	9.0	1,224,543
2045	1,592,327	185,407	114,002	71,405	246,445	244,538	-61,037	6.7	9.0	1,029,979
2050	1,026,886	174,279	126,030	48,248	323,669	321,370	-149,390	3.6	9.0	601,614
2055	-47,436	136,630	136,630	-	402,151	399,392	-265,522	0.5	9.0	-25,171
2060		147,610	147,610	-	496,638	493,337	-349,028		9.0	
2065		163,868	163,868	-	599,872	595,931	-436,004		9.0	
2070		183,218	183,218	-	693,290	688,578	-510,072		9.0	
2075		201,873	201,873	-	786,959	781,333	-585,086		9.0	
2080		226,504	226,504	-	896,581	889,877	-670,077		9.0	
2085		262,772	262,772	-	992,669	984,690	-729,897		9.0	
2090		302,559	302,559	-	1,056,953	1,047,454	-754,395		9.0	
2093		325,848	325,848	-	1,098,851	1,088,305	-773,003		9.0	

○ GDP 대비 재정수지전망

- GDP 대비 적립기금은 2023년 41.9%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2년에 47.8%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
- GDP 대비 급여지출은 2023년 1.7%에서 점차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9% 수준에 도달2)

2) OECD 연금보고서의 공적연금은 공적 소득비례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하므로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지출 수치의 국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 부과방식비용률(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율)
- 부과방식비용률은 2023년 6.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78년 35.0%에 도달한 후 1980년대 이후의 저출산세대가 고령인구에 포함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30%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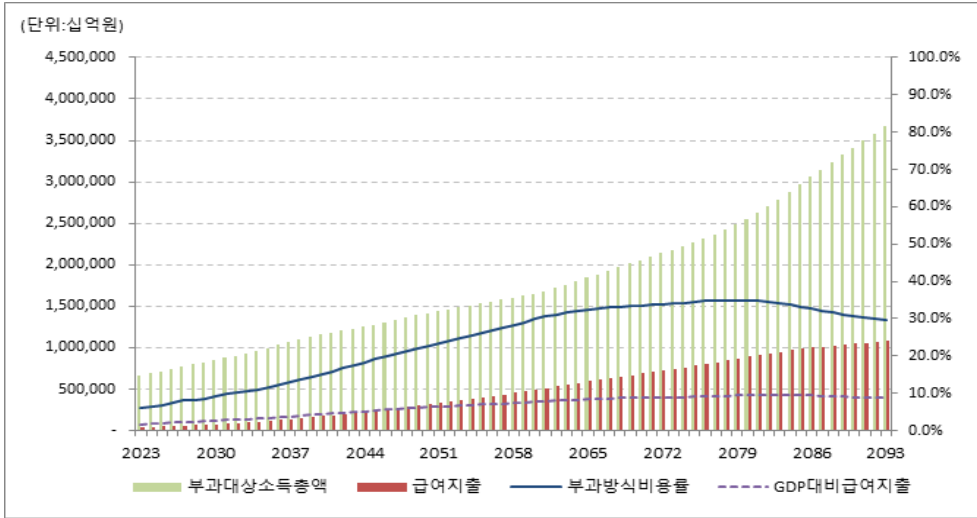
〈표 9〉 부과방식비용률 및 GDP 대비 급여지출 추이

(단위 : 경상가, 십억원, %)

연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총액 (가)	급여지출 (나)	GDP (다)	GDP대비 보험료부과 대상소득총액 (가)/(다)	GDP대비 급여지출 (나)/(다)	부과방식 비용률 (나)/(가)	<참고> 제도부양비*
2023	662,683	39,521	2,267,074	29.2	1.7	6.0	24.0
2025	714,606	49,494	2,446,266	29.2	2.0	6.9	28.0
2030	850,570	78,152	2,927,643	29.1	2.7	9.2	36.4
2035	996,554	117,020	3,448,493	28.9	3.4	11.7	47.9
2040	1,159,896	175,274	4,001,328	29.0	4.4	15.1	62.9
2045	1,278,202	244,538	4,556,410	28.1	5.4	19.1	80.0
2050	1,415,163	321,370	5,114,346	27.7	6.3	22.7	95.6
2055	1,529,636	399,392	5,726,186	26.7	7.0	26.1	109.7
2060	1,653,534	493,337	6,389,066	25.9	7.7	29.8	125.4
2065	1,841,509	595,931	7,075,018	26.0	8.4	32.4	135.1
2070	2,058,805	688,578	7,796,786	26.4	8.8	33.4	138.3
2075	2,266,053	781,333	8,585,402	26.4	9.1	34.5	141.8
2080	2,550,422	889,877	9,469,884	26.9	9.4	34.9	143.1
2085	2,967,134	984,690	10,465,305	28.4	9.4	33.2	134.9
2090	3,410,661	1,047,454	11,619,190	29.4	9.0	30.7	124.0
2093	3,668,224	1,088,305	12,417,173	29.5	8.8	29.7	119.6

\*제도부양비 =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입자 수

[그림 8] 부과방식비용률 및 GDP 대비 급여지출 추이



## 나. 재정평가

### □ 적립기금 유지를 위한 필요보험료율

○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를 위한 필요보험료율을 추계

- 적립배율 수준과 보험료 인상 시점에 따라 17.86%(25년 일시인상) ~ 23.73%(35년 일시인상)으로 추정

〈표 10〉 적립기금 유지를 위한 필요보험료율

보험료율 인상시점	적립배율 1배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유지 (적립배율)
2025년 일시인상	17.86%	18.08%	18.71%	19.57%	20.77% (14.8배)
2035년 일시인상	20.73%	21.01%	21.85%	22.54%	23.73% (11.7배)

## 2. 재정안정화 방안

-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재정계산기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sup>3)</sup>
  -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을 검토할 수 있고,
  -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연금지급률 인하와 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상향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 지급률은 현재에도 하향조정되고 있는 만큼 제외함

### 가. 연금보험료율 조정

-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연금보험료율(9%)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함
  - 연금보험료율 조정의 재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금보험료율 12%, 15%, 18% 조정방안을 검토함
-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
  - 보험료율을 향후 5년에 걸쳐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2047년에 수지적자 2063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3)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미래 경제규모 대비 연금지출의 적정성 특히, 전 사회적인 자원 조달 능력의 균형으로도 확보(다양한 세원을 활용한 국고지원, 기금의 사회투자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표 11〉 보험료율 12% 단계적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구분	보험료수입 < 급여지출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시점 (적자규모) (GDP 대비 누적적자 비율*)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비용률 (소진시점) (최대시점) (2093년)	GDP 대비 급여지출 (소진시점) (2093년)
보험료율12% (2025년부터 0.6%p씩 5년간)	2036년	2047년	2063년 (-181조원) (63%)	2046년 (2,464조원) (52.8%)	31.6%(‘63년) 35.1%(‘78년) 29.7%(‘93년)	8.2%(‘63년) 8.8%(‘93년)

주) 제5차 재정계산 기본가정

\* 2093년까지 적자 규모 총액을 2023년 기준으로 환산

□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

- 보험료율을 향후 10년에 걸쳐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2053년에 수지적자, 2071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구분	보험료수입 < 급여지출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시점 (적자규모) (GDP 대비 누적적자 비율*)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 비용률 (소진시점) (최대시점) (2093년)	GDP 대비 급여지출 (소진시점) (2093년)
보험료율15% (2025년부터 0.6%p씩 10년간)	2040년	2053년	2071년 (-65조원) (37%)	2052년 (3,355조원) (62.7%)	33.7%(‘71년) 35.1%(‘78년) 29.8%(‘93년)	8.9%(‘71년) 8.8%(‘93년)

주) 제5차 재정계산 기본가정

\* 2093년까지 적자 규모 총액을 2023년 기준으로 환산

□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는 방안

- 보험료율을 향후 15년에 걸쳐 18%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2060년에 수지적자, 2082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보험료율 18% 단계적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구분	보험료수입 < 급여지출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시점 (적자규모) (GDP 대비 누적적자 비율*)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 비용을 (소진시점) (최대시점) (2093년)	GDP 대비 급여지출 (소진시점) (2093년)
보험료율18% (2025년부터 0.6%p씩 15년간)	2044년	2060년	2082년 (-303조원) (14%)	2059년 (4,533조원) (72.5%)	34.6%(‘82년) 35.2%(‘78년) 29.8%(‘93년)	9.5%(‘82년) 8.8%(‘93년)

주) 제5차 재정계산 기본가정

\* 2093년까지 적자 규모 총액을 2023년 기준으로 환산

## 나. 연금 지급개시연령 조정

-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7년(남녀 통합)이었던 기대수명은 2020년 현재 83.5년이며, 2070년에는 91.2년(중위가정)까지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23)\*

\* UN의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의하면 2021년 기준 OECD 38개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0.0년(남성 77.2년, 여성 82.7년)이며, 한국은 83.7년(남성 80.4년, 여성 86.8년)임(UN, 2022)

- 이에 추가적 재정안정화 조치로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
- 다만, 지급개시연령의 연장은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고령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고령자 고용정책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함
- 지급개시연령을 68세까지 조정하였을 때 2043년에 수지적자, 2059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구분	보험료수입 < 급여지출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시점 (적자규모)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비용률 (소진시점) (최대시점) (2093년)	GDP 대비 급여지출 (소진시점) (2093년)
65세 (현행)	2030년	2041년	2055년 (-47조원)	2040년 (1,755조원) (43.9%)	26.1%('55년) 35.0%('78년) 29.7%('93년)	7.0%('55년) 8.8%('93년)
66세	2030년	2042년	2057년 (-88조원)	2041년 (1,804조원) (43.8%)	25.9%('57년) 33.6%('78년) 28.5%('93년)	6.8%('57년) 8.4%('93년)
67세	2030년	2043년	2058년 (-50조원)	2042년 (1,807조원) (42.8%)	25.5%('58년) 32.7%('79년) 28.0%('93년)	6.7%('58년) 8.3%('93년)
68세	2030년	2043년	2059년 (-89조원)	2042년 (1,807조원) (42.8%)	24.9%('59년) 31.7%('77년) 27.5%('93년)	6.5%('59년) 8.1%('93년)

주 1) 제5차 재정계산 기본가정

2) 지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 이후 5년마다 1세씩 조정

### 다.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더불어 기금 운용 인프라 개선을 통한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병행

-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려야 하므로 그만큼 관리의 위험성도 커지게 됨
- 현재 기금의 연간 손실확률은 약 25% 수준\*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증가 시 연간손실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운용위험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통계적으로 4년에 한번 마이너스 수익률 발생 가능

○ 기금투자 수익률을 제5차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예상한 것보다 전 기간에 걸쳐 0.5%p 상향시켰을 때 2043년에 수지적자,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금투자 수익률을 1.0%p 상향시켰을 때 2044년에 수지적자,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기금투자 수익률 제고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구분	보험료수입 < 급여지출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시점 (적자규모)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비용률 (소진시점) (최대시점) (2093년)	GDP 대비 급여지출 (소진시점) (2093년)
기금투자수익률 유지 (현행)	2030년	2041년	2055년 (-47조원)	2040년 (1,755조원) (43.9%)	26.1%(‘55년) 35.0%(‘78년) 29.7%(‘93년)	7.0%(‘55년) 8.8%(‘93년)
기금투자수익률 0.5%p 상향	2030년	2043년	2057년 (-81조)	2042년 (1,954조원) (46.2%)	27.6%(‘57년) 35.0%(‘78년) 29.7%(‘93년)	7.3%(‘57년) 8.8%(‘93년)
기금투자수익률 1.0%p 상향	2030년	2044년	2060년 (-333조)	2043년 (2,210조원) (51.0%)	29.8%(‘60년) 35.0%(‘78년) 29.7%(‘93년)	7.7%(‘60년) 8.8%(‘93년)

주 1) 제5차 재정계산 기본가정

2) 기금투자수익률은 2023년~2093년 평균값

## 라. 재정안정화 방안 종합 검토

- 보험료율의 인상과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연장 및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노력을 함께 조합하여 검토
- 보험료율 12% 인상과 추가 재정안정화 방안 조합
  - 보험료율 12% 인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8세 조정 시 2052년에 수지적자, 2069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6〉 보험료율 12% 인상과 연금 지급개시연령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구분	보험료수입 < 급여지출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시점 (적자규모) (GDP 대비 누적적자 비율*)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비용률 (소진시점) (최대시점) (2093년)	GDP 대비 급여지출 (소진시점) (2093년)
보험료율 12%	2036년	2047년	2063년 (-181조원) (63%)	2046년 (2,464조원) (52.8%)	31.6%(‘63년) 35.1%(‘78년) 29.7%(‘93년)	8.2%(‘63년) 8.8%(‘93년)
+지급개시연령 68세	2036년	2052년	2069년 (-103조원) (42%)	2051년 (2,791조원) (53.4%)	30.1%(‘69년) 31.8%(‘78년) 27.6%(‘93년)	7.9%(‘69년) 8.1%(‘93년)

주 1)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인상하여 5년 후 12% 도달

2) 지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 이후 5년마다 1세씩 조정

\* 2093년까지 적자 규모 총액을 2023년 기준으로 환산

- 보험료율 12% 인상,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시 2052년에 수지적자, 2070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 보험료율 12% 인상과 기금투자수익률 상향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구분	보험료수입 < 급여지출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시점 (적자규모) (GDP 대비 누적적자 비율*)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비용률 (소진시점) (최대시점) (2093년)	GDP 대비 급여지출 (소진시점) (2093년)
보험료율 12%	2036년	2047년	2063년 (-181조원) (63%)	2046년 (2,464조원) (52.8%)	31.6%('63년) 35.1%('78년) 29.7%('93년)	8.2%('63년) 8.8%('93년)
+기금투자수익률 0.5%p 상향	2036년	2049년	2066년 (-240조원) (43%)	2048년 (2,841조원) (58.1%)	32.7%('66년) 35.1%('78년) 29.7%('93년)	8.6%('66년) 8.8%('93년)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2036년	2052년	2070년 (-322조원) (26%)	2051년 (3,378조원) (64.6%)	33.5%('70년) 35.1%('78년) 29.7%('93년)	8.8%('70년) 8.8%('93년)

주 1)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인상하여 5년 후 12% 도달  
 2) 기금투자수익률은 2023년~2093년 평균값  
 \* 2093년까지 적자 규모 총액을 2023년 기준으로 환산하였으며 할인율에 따라 변동

- 보험료율 12%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조정 및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시 2060년에 수지적자, 2080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8〉 보험료율 12% 인상과 추가 재정안정화 방안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구분	보험료수입 < 급여지출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시점 (적자규모) (GDP 대비 누적적자 비율*)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비용률 (소진시점) (최대시점) (2093년)	GDP 대비 급여지출 (소진시점) (2093년)
보험료율 12%	2036년	2047년	2063년 (-181조원) (63%)	2046년 (2,464조원) (52.8%)	31.6%('63년) 35.1%('78년) 29.7%('93년)	8.2%('63년) 8.8%('93년)
+지급개시연령 68세 +기금투자수익률 0.5%p 상향	2036년	2055년	2073년 (-23조원) (25%)	2054년 (3,388조원) (60.5%)	31.1%('73년) 31.8%('78년) 27.6%('93년)	8.2%('73년) 8.1%('93년)
+지급개시연령 68세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2036년	2060년	2080년 (-373조원) (11%)	2059년 (4,339조원) (69.4%)	31.7%('80년) 31.8%('78년) 27.6%('93년)	8.5%('80년) 8.1%('93년)

주 1)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인상하여 5년 후 12% 도달  
 2) 지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 이후 5년마다 1세씩 조정  
 3) 기금투자수익률은 2023년~2093년 평균값  
 \* 2093년까지 적자 규모 총액을 2023년 기준으로 환산하였으며 할인율에 따라 변동

## □ 보험료율 15% 인상과 추가 재정안정화 방안 조합

- 보험료율 15%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조정 시 2061년에 수지적자, 2082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9〉 보험료율 15% 인상과 연금 지급개시연령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구분	보험료수입 < 급여지출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시점 (적자규모) (GDP 대비 누적적자 비율*)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 비용률 (소진시점) (최대시점) (2093년)	GDP 대비 급여지출 (소진시점) (2093년)
보험료율 15%	2040년	2053년	2071년 (-65조원) (37%)	2052년 (3,355조원) (62.7%)	33.7%('71년) 35.1%('78년) 29.8%('93년)	8.9%('71년) 8.8%('93년)
+지급개시연령 68세	2042년	2061년	2082년 (-443조원) (14%)	2060년 (4,305조원) (67.4%)	31.5%('82년) 31.8%('77년) 27.6%('93년)	8.7%('82년) 8.2%('93년)

주 1)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인상하여 10년 후 15% 도달

2) 지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 이후 5년마다 1세씩 조정

\* 2093년까지 적자 규모 총액을 2023년 기준으로 환산

- 보험료율 15% 인상,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시 2062년에 수지적자, 2084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0〉 보험료율 15% 인상과 기금투자수익률 상향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구분	보험료수입 < 급여지출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시점 (적자규모) (GDP 대비 누적적자 비율*)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 비용률 (소진시점) (최대시점) (2093년)	GDP 대비 급여지출 (소진시점) (2093년)
보험료율 15%	2040년	2053년	2071년 (-65조원) (37%)	2052년 (3,355조원) (62.7%)	33.7%('71년) 35.1%('78년) 29.8%('93년)	8.9%('71년) 8.8%('93년)
+기금투자수익률 0.5%p 상향	2040년	2057년	2076년 (-104조원) (20%)	2056년 (4,079조원) (69.7%)	34.8%('76년) 35.1%('78년) 29.8%('93년)	9.2%('76년) 8.8%('93년)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2040년	2062년	2084년 (-284조원) (7%)	2061년 (5,234조원) (80.2%)	33.8%('84년) 35.1%('78년) 29.8%('93년)	9.5%('84년) 8.8%('93년)

주 1)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인상하여 10년 후 15% 도달

2) 기금투자수익률은 2023년 일시 적용

\* 2093년까지 적자 규모 총액을 2023년 기준으로 환산하였으며 할인율에 따라 변동

- 보험료율 15%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조정 및 기금투자수익률을 1%p 상향 시 2083년에 수지적자, 2093년에 적립배율 8.4배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 보험료율 15% 인상과 추가 재정안정화 방안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구분	보험료수입 < 급여지출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시점 (적자규모) (GDP 대비 누적적자 비율*)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 비용률 (소진시점) (최대시점) (2093년)	GDP 대비 급여지출 (소진시점) (2093년)
보험료율 15%	2040년	2053년	2071년 (-65조원) (37%)	2052년 (3,355조원) (62.7%)	33.7%('71년) 35.1%('78년) 29.8%('93년)	8.9%('71년) 8.8%('93년)
+지급개시연령 68세 +기금투자수익률 0.5%p 상향	2042년	2067년	2091년 (-199조원) (2%)	2066년 (5,649조원) (78.3%)	28.4%('91년) 31.8%('77년) 27.6%('93년)	8.4%('91년) 8.2%('93년)
+지급개시연령 68세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2042년	2083년	2093년 적립배율 8.4배 -	2082년 (8,797조원) (89.3%)	- 31.8%('77년) 27.6%('93년)	8.2%('93년)

주 1)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인상하여 10년 후 15% 도달  
 2) 지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 이후 5년마다 1세씩 조정  
 3) 기금투자수익률은 2023년~2093년 평균값  
 \* 2093년까지 적자 규모 총액을 2023년 기준으로 환산하였으며 할인율에 따라 변동

## □ 보험료율 18% 인상과 추가 재정안정화 방안 조합

- 보험료율 18% 인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8세 조정 시 2093년에 적립배율 4.3배 유지

〈표 22〉 보험료율 18% 인상과 연금 지급개시연령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구분	보험료수입 < 급여지출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시점 (적자규모) (GDP 대비 누적적자 비율*)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 비용률 (소진시점) (최대시점) (2093년)	GDP 대비 급여지출 (소진시점) (2093년)
보험료율 18%	2044년	2060년	2082년 (-303조원) (14%)	2059년 (4,533조원) (72.5%)	34.6%('82년) 35.2%('78년) 29.8%('93년)	9.5%('82년) 8.8%('93년)
+지급개시연령 68세	2047년	2073년	2093년 적립배율 4.3배 -	2072년 (6,638조원) (81.9%)	- 31.9%('78년) 27.6%('93년)	8.2%('93년)

주 1)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인상하여 15년 후 18% 도달  
 2) 지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 이후 5년마다 1세씩 조정  
 \* 2093년까지 적자 규모 총액을 2023년 금액 기준으로 환산

- 보험료율 18% 인상, 기금투자수익률을 1%p 상향 시 2093년에 적립 배율 8.7배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보험료율 18% 인상과 기금투자수익률 상향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구분	보험료수입 < 급여지출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시점 (적자규모) (GDP 대비 누적적자 비율*)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 비용률 (소진시점) (최대시점) (2093년)	GDP 대비 급여지출 (소진시점) (2093년)
보험료율 18%	2044년	2060년	2082년 (-303조원) (14%)	2059년 (4,533조원) (72.5%)	34.6%('82년) 35.2%('78년) 29.8%('93년)	9.5%('82년) 8.8%('93년)
+기금투자수익률 0.5%p 상향	2044년	2066년	2093년 (-417조원) (0.3%)	2065년 (5,859조원) (82.8%)	- 35.2%('78년) 29.8%('93년)	8.8%('93년)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2044년	-	2093년 적립배율 8.7배 -	2093년 (9,683조원) (78.0%)	- 35.2%('78년) 29.8%('93년)	8.8%('93년)

주 1)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인상하여 15년 후 18% 도달  
 2) 기금투자수익률은 2023년~2093년 평균값  
 \* 2093년까지 적자 규모 총액을 2023년 기준으로 환산하였으며 할인율에 따라 변동

- 보험료율 18%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조정 및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시 2093년에 적립배율 23.6배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 보험료율 18% 인상과 추가 재정안정화 방안 조합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구분	보험료수입 < 급여지출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시점 (적자규모) (GDP 대비 누적적자 비율*)	최대적립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 비용률 (소진시점) (최대시점) (2093년)	GDP 대비 급여지출 (소진시점) (2093년)
보험료율 18%	2044년	2060년	2082년 (-303조원) (14%)	2059년 (4,533조원) (72.5%)	34.6%('82년) 35.2%('78년) 29.8%('93년)	9.5%('82년) 8.8%('93년)
+지급개시연령 68세 +기금투자수익률 0.5%p 상향	2047년	-	2093년 적립배율 12.2배 -	2093년 (12,703조원) (102.3%)	- 31.9%('78년) 27.6%('93년)	8.2%('93년)
+지급개시연령 68세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2047년	-	2093년 적립배율 23.6배 -	2093년 (25,097조원) (202.1%)	- 31.9%('78년) 27.6%('93년)	8.2%('93년)

주 1)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인상하여 15년 후 18% 도달  
 2) 지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 이후 5년마다 1세씩 조정  
 3) 기금투자수익률은 2023년 일시 적용  
 \* 2093년까지 적자 규모 총액을 2023년 기준으로 환산하였으며 할인율에 따라 변동

□ 재정안정화 방안 종합 결과

- 보험료율을 12%까지 인상하고 지급개시연령 68세 조정과 기금투자수익률 1%p 제고를 조합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80년으로 늦춰지나 재정추계기간 동안 기금을 유지하기는 어려움
-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높이면 기금소진연도가 2082년으로 늦춰지며, 추가로 기금투자수익률을 0.5%p 높이면 기금소진연도는 2091년으로 늦춰지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0%p 높이면 재정추계기간 동안 기금을 유지함
- 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하면 2082년에 기금이 소진되나 지급개시연령 68세와 기금수익률(0.5%p, 1%p) 중 하나 이상을 조합하면 2093년에 기금이 소진되거나 재정추계기간 기금을 유지함

## 제4장 노후소득보장 방안



## 제4장 노후소득보장 방안

-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급여제도 및 가입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 특히 급여수준 제고, 가입기간 확대, 사각지대 해소 등을 검토함
- 아울러, 저소득 노인의 빈곤 개선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에서 기초연금의 역할 정립을 위한 개선방향을 검토함

### 1. 급여제도 개선

#### 가. 소득대체율

- 현황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노후빈곤 예방 및 퇴직 전 생활수준 유지에 미흡
    - 법정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40%이나 국민연금의 평균 연금액은 월 61.9만 원(2023년 3월 기준)으로 같은 해 A값(286.1만 원) 대비 21.6%

〈표 25〉 소득계층별 법정 소득대체율

구분	0.5A	0.75A	1A	1.25A	2A
현행 소득비례	60%	47%	40%	36%	30%

-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평균인 13.1%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음(OECD, 2021)
- 국민연금 법정 소득대체율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이 존재함
  - 전자는 OECD 연금보고서에서 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게 소개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 급여의 재분배 구조, 짧은 의무가입기간, 기초연금 미포함 등에 따른 결과이며, 법정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의 직접 주제인 지급률은 국제 수준과 비슷하다고 평가함

- 후자는 OECD 연금보고서를 비교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모든 소득집단에서 다른 나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에 비해 낮게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국민연금 법정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를 내실화하자는 의견과 국민연금 법정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재정전망

- 보험료율 9%를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2025년 45%로 일시 인상할 경우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으로 동일하나 기금소진 시점은 2054년으로 앞당겨지며, 부과방식 비용률은 2078년 최대 35%가 2079년 최대 39.1%로 증가하고, 추계기간 말인 2093년에는 29.7%에서 33.3%로 증가함
- 소득대체율을 2025년 50%로 일시 인상할 경우 수지적자 시점은 2040년, 기금소진시점은 2054년이며, 부과방식 비용률은 2079년 최대 43.2%로 증가하고, 추계기간 말인 2093년에는 29.7%에서 37.0%로 증가함
-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년간 0.6%p씩 인상하여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2025년 45%로 일시 인상할 경우 수지적자 시점은 2046년, 기금소진 시점은 2061년이며, 부과방식 비용률은 2078년 최대 35.1%가 2078년 최대 39.1%로 증가하고, 추계기간 말인 2093년에는 29.7%

에서 33.4%로 증가함

- 소득대체율을 2025년 50%로 일시 인상할 경우 수지적자 시점은 2045년, 기금소진시점은 2060년이며, 부과방식 비용률은 2078년 최대 35.1%가 2079년 최대 43.2%로 증가하고, 추계기간 말인 2093년에는 29.7%에서 37.0%로 증가함

○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10년간 0.6%p씩 인상하여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2025년 45%로 일시 인상할 경우 수지적자 시점은 205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68년이며, 부과방식 비용률은 2078년 최대 35.1%가 2079년 최대 39.2%로 증가하고, 추계기간 말인 2093년에는 29.8%에서 33.4%로 증가함

- 소득대체율을 2025년 50%로 일시 인상할 경우 수지적자 시점은 2050년, 기금소진시점은 2065년이며, 부과방식 비용률은 2078년 최대 35.1%가 2079년 최대 43.3%로 증가하고, 추계기간 말인 2093년에는 29.8%에서 37.1%로 증가함

□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함

〈표 26〉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재정전망

구분		보험료 수입 < 급여지출 시점	수지 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적자규모) (GDP 대비 누적적자 비율*)	최대적립 시점 (기금규모) (GDP 대비 비율)	부과방식 비용률 (소진시점) (최대시점) (2093년)	GDP 대비 급여지출 <sup>4)</sup> (소진시점) (최대시점) (2093년)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9%	40%	2030년	2041년	2055년 (-47조원) (95%)	2040년 (1,755조원) (43.9%)	26.1%('55년) 35.0%('78년) 29.7%('93년)	7.0%('55년) 9.5%('82년) 8.8%('93년)
	45%	2030년	2041년	2054년 (-41조원) (111%)	2040년 (1,735조원) (43.4%)	26.9%('54년) 39.1%('79년) 33.3%('93년)	7.2%('54년) 10.6%('81년) 9.8%('93년)
	50%	2030년	2040년	2054년 (-296조원) (125%)	2039년 (1,718조원) (44.2%)	28.5%('54년) 43.2%('79년) 37.0%('93년)	7.7%('54년) 11.7%('81년) 10.9%('93년)
12% (2025년 부터 0.6%씩 5년간)	40%	2036년	2047년	2063년 (-181조원) (63%)	2046년 (2,464조원) (52.8%)	31.6%('63년) 35.1%('78년) 29.7%('93년)	8.2%('63년) 9.5%('81년) 8.8%('93년)
	45%	2036년	2046년	2061년 (-123조원) (80%)	2045년 (2,404조원) (52.8%)	33.1%('61년) 39.1%('78년) 33.4%('93년)	8.5%('61년) 10.6%('81년) 9.9%('93년)
	50%	2035년	2045년	2060년 (-322조원) (95%)	2044년 (2,350조원) (52.9%)	34.6%('60년) 43.2%('79년) 37.0%('93년)	9.0%('60년) 11.8%('83년) 10.9%('93년)
15% (2025년 부터 0.6%씩 10년간)	40%	2040년	2053년	2071년 (-65조원) (37%)	2052년 (3,355조원) (62.7%)	33.7%('71년) 35.1%('78년) 29.8%('93년)	8.9%('71년) 9.5%('81년) 8.8%('93년)
	45%	2040년	2051년	2068년 (-227조원) (53%)	2050년 (3,185조원) (62.3%)	36.6%('68년) 39.2%('79년) 33.4%('93년)	9.6%('68년) 10.6%('81년) 9.9%('93년)
	50%	2039년	2050년	2065년 (-13조원) (71%)	2049년 (3,048조원) (61.0%)	38.5%('65년) 43.3%('79년) 37.1%('93년)	10.0%('65년) 11.8%('83년) 11.0%('93년)

\* 2093년까지 적자 규모 총액을 2023년 기준으로 환산

4) 각주 2)와 같이 GDP대비 국민연금 급여지출 수치의 국제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 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제도 개선

### □ 현황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소득 업무에 종사할 경우 A값 초과소득구간별 감액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
- 2022년 12월 기준(2022년 누적)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127,924명이며 총 감액금액은 190,620백만 원임

〈표 27〉 소득구간별 감액산식 및 소득구간별 재직자 현황

		(2022년 12월, 인원, 백만원)				
A값 초과소득월액	감액산식	월감액금액	총 계	인원 금액	127,974 190,620	(100%) (100%)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0~5만원 미만	인원	60,934	12,060	(47.6%) (6.3%)
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0%	5~15만원 미만	인원	26,328	21,896	(20.6%) (11.5%)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	15~30만원 미만	인원	12,525	23,901	(9.8%) (12.5%)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	30~50만원 미만	인원	6,490	20,786	(5.1%) (10.9%)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	50만원 이상	인원	21,697	111,977	(17.0%) (58.7%)

### □ 문제점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존치 여부에 대한 상반된 입장 존재
  - (제도 폐지 입장) OECD의 폐지 권고, 해외 주요국의 감액 제도 폐지 추세, 연금수급권에 대한 인식 강화
  - (현행 유지 입장) 고소득층에 대한 과잉보장 문제 방지, 연금감액으로 연금재정 지출 부담 완화

□ 개선방안

- 고령자 노동 유인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금재정을 고려하여 당분간 유지할 것을 제안

다.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개선

1) 유족연금

□ 현황

-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40%, 10년~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연금으로 지급
  - 유족연금 수급자 중 10년 미만 가입자가 가장 많은 비율 차지

\* 유족연금 수급자 '22년 현재 95만명 중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60.0%임

□ 문제점

- 유족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0년 미만 가입 시 8%로, ILO 제102호 조약의 최저기준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2022년 월평균 유족연금 지급액은 318,101원(부양가족연금액 포함)으로, 월평균 노령연금 지급액인 586,112원의 54.3%이며,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인 583,444원의 54.5% 수준에 불과

- 이는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하고 있는 것과 의제가입기간을 20년으로 짧게 설정한 것에 기인
- 중복급여 조정 시 낮은 유족연금 지급률로 인해 적정 급여수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 단기 가입자의 유족을 고려하고, 공무원·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일원화

- 급여의 중복수급 시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 공무원·사학연금 등 타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 받던 유족연금의 30%에서 50%로 상향

## 2) 장애연금

### □ 현황

-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1급 100%, 2급 80%, 3급 60%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4급은 일시금 지급

〈표 28〉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급여수준

장애등급	급여수준	급여형태
1급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연금
2급	기본연금액의 80%+부양가족연금액	연금
3급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연금
4급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일시금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을 20년으로 의제 처리함

- 장애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 10년간 7.8~8만명 유지

### □ 문제점

- 장애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20%로, ILO 제102호 조약의 최저기준 40%의 절반 수준

〈표 29〉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1급	2급	3급
20년 미만	20%	16%	12%
30년	30%	24%	18%

- 특히, 장애연금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장애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야기

□ 개선방안

- 장애연금 급여 적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급여등급체계, 지급률, 의제가입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 필요

라.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 현황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2014년 국민연금법에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문구 신설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4년 신설)

□ 문제점

- 국민연금 미래 지급에 대한 불안 완화를 위해 현행보다 명확하게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 제기
- 반면, 현행 국민연금법 조항으로도 사실상 지급보장이 가능하므로 문구 수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지급보장 법제화 시, 현행 보험료율과 급여수준 등이 유지될 것으로 오해하여 개혁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개선방안

- 국민 안심 차원에서 지급보장 법제화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논의 필요

## 2. 가입제도 개선

### 가. 가입연령 조정

#### □ 현황

- 1998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늘어나는 중이나 가입연령 상한은 59세로 고정

〈표 30〉 국민연금 수급연령 조정 일정

출생연도	연금종류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 □ 문제점

- 가입연령은 고정한 상태로 수급연령만 조정하고 있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도 증가하여 노후소득보장 저해
- 60~64세의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용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을 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 □ 개선방안

- 가입연령 상한을 수급개시 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켜 추가적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소득이 없는 이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알릴 필요
  - 2033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지역가입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중단 가능

- 가입연령 상한을 조정할 경우 A값 하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 필요

## 나. 크레딧 확대

### 1) 출산크레딧

#### □ 현황

##### ○ 개요

- (적용 대상)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출산 시 추가 가입기간 인정
- (인정 시점)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 (인정 기간) 둘째 자녀 12개월, 이후 추가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 최대 50개월
- (인정 소득) A값의 100%(2023년 286만 원)
- (재원) 국고 30%, 기금 70%

##### ○ 도입 취지와 수급 현황

- (도입 취지) 출산율 제고 및 연금액 인상 또는 연금수급자 증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수급 현황) 2008년 출산크레딧 도입 이후 2022년까지 4,347명이 크레딧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약 52억 6천 7백만 원 소요

#### □ 문제점

- 인정 기간이 짧고 수급시점에 인정해주는 사후지원 방식으로 인해 출산율 제고 및 수급자 증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기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크레딧을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에 지원하므로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가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 출산 및 양육은 30대를 전후로 이루어지나,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

서 지급되는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시 지원하므로  
재원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한다는 비판

- 일반적으로 대다수 선진국들의 출산 및 양육크레딧 재원은 국고 부담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재원은 국고 30% 기금 70%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민연금법에 재원 부담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추가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 산정에는 포함되나, 장애·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 산정에는 미반영

#### □ 개선방안

- 첫째 자녀부터 자녀 당 12개월씩 크레딧 부여(최대 60개월)
- 인정 소득은 현행 A값의 100% 유지
-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국고지원 확대 필요
  -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같이 국고 100% 지원
- 사전 지원방식으로 변경

## 2) 군복무 크레딧

#### □ 현황

- 개요
  - (적용 대상) 2008년 이후 입대한 6개월 이상 군복무자
  - (인정 시점)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 (인정 기간) 6개월
  - (인정 소득) A값의 50%(2023년 143만원)
  - (재원) 국고 100%, 2048년부터 재정소요 발생
- 도입 취지 :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 문제점

- 출산크레딧에 비해 군복무크레딧으로 인한 연금액 인상효과 미흡
  - 인정 기간이 짧고(6개월), 인정 소득은 A값의 1/2이며, 사후지원 방식
  -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가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 군복무는 20대 초반에 이루어지나,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시 지원하므로 재원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한다는 비판
- 추가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 산정에는 포함되나, 장애·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 산정에는 미반영

□ 개선방안

- 군복무 전 기간에 대해 크레딧 부여
- 국고지원은 현행 100% 유지
- 사전 지원방식으로 변경

**다. 보험료 지원 확대**

□ 현황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95. 7. 시행), 두루누리 사회보험료('12. 7. 시행), 실업크레딧('16. 8. 시행) 지원에 이어 2022년 7월부터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 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됨

\* 재산(6억 원 미만)과 소득(1,680만 원 미만; 근로·사업소득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납부 재개 자에게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 지원

□ 문제점

-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다양한 보험료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 누락된 사각지대가 존재함과 함께 보험료 지원 정책의 효과성 문제 제기
- '신규' 가입자 확충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통해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와 급여 적정성 문제를 충실히 해소할지가 불확실함

#### □ 개선방안

-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보험료 지원 확대
  -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
  - 보험료 지원 대상을 현재의 납부재개자에서 가입자 전체로 확대 검토
  - 보험료율 상향 시 추가 부담분에 대한 지원 검토
- 보험료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험료 지원 제도의 수급 요건과 지원 수준의 종합적 검토 및 정교화 필요

###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확대

#### □ 현황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 기간과 근로 시간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 요건을 추가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짐
  - 일용 및 기한 근로: 고용 기간 요건을 3개월 고용에서 1개월 고용으로 완화('03)
  - 시간제 근로: 근로 시간 요건을 월 80시간에서 월 60시간으로 완화('11)
  - 소득 요건 추가: 근로 일수/시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소득 기준(월 220만원) 충족 시 사업장 가입('2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소득 파악 등의 한계로 사각지대에 놓일 개연성이 높음

□ 문제점

- 특고종사자는 사실상 순수한 자영자부터 종속적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다른 없는 유형 등 세부 유형이 다양하여 단일의 접근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음
  - 국민연금의 근로자 개념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기에 근로자성(사용 종속관계)이 인정되지 않는 특고종사자는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
  -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의 1/2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

□ 개선방안

-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상 특고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 확대를 시도하는 산재·고용보험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연금에서도 특고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검토
- 사업장 가입 확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함과 함께 소득 파악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지원

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 현황

- 1995년 하한액(7만 원→ 22만 원)과 상한액(200만 원→ 360만 원)을 조정한 이후 2010년 7월부터는 상·하한액을 국민연금 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 및 고시
- 2022년 말 기준 소득 하한액 구간 가입자 비중은 약 1%, 상한액 이상 가입자 비중은 12%~13% 수준

## □ 문제점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고소득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소득자의 연금 증액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상한액 인상 필요성 제기
  - 낮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은 실제 고소득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저평가하고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낮춰 전체 연금 가입자의 급여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및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현행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그간의 재정계산 권고안(최저생계비의 1.0배, 0.2A)보다 낮은 수준
  - 장기 가입한 저소득자가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급여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한액 인상 필요
    -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한도(100%) 설정에 따라, 하한액 가입자는 23년 이상 가입하더라도 최대 급여액이 하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시,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선의 시급성은 낮다는 의견 제기

## □ 개선방안

-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합리성 차원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 제안
  - \* 예) 상·하한액을 A값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매년 그 변동에 따라 조정상한액을 높이는 방안 검토

###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가. 현황

- 국민연금의 보완적 제도로써 기초연금의 역할
  - 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입된 이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짧게 가입한 무·저연금자 등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보충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로 작동해 옴
  -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11년 46.5%에서 '21년 37.6%로 감소했으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1년 기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약 7.3%p 감소시키는 데 기여함(기초연금 부재 시 44.9% → 실제 37.6%)
  
- 제도 개괄
  - (선정기준) 노인소득하위 70%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 ('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 (지급대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14년 435만명에서 '22년 12월 기준 약 624만 명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약 459.6만 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약 303만 명)는 66%를 차지함
  
  - (기준연금액) '23년 기준연금액은 월 323,180원(부부 517,080원)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됨
    - \* ('14.7) 20만 원 → ('18.9) 25만 원 → ('19.4~'21) 30만 원(단계적 인상)→ ('23.) 32.3만 원

## 나. 문제점

- 기초연금 수급 대상의 적정성 문제
  - 65세 이상 노인의 70%라는 목표 수급률은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설정되어, 현세대 노인의 경제 상황의 개선과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시의성이 떨어짐
- 기초연금의 저소득 노인 대상 소득보장 효과 불충분성
  - 65세에 진입하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 취약계층(고연령대, 여성,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율이 훨씬 높아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성은 불충분한 상황으로 진단됨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의 불명확성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중복, 기준연금액의 빠른 증가 등으로 공적연금 체계 내 역할 및 기능이 불명확함
  -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존재로 향후 기초연금 급여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국민연금 가입 유인 약화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다. 개선 방향

- 기초연금 대상자 조정 검토
  -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을 향후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노인 소득·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
    - 65세 이상 노인 70%라는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검토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저소득 노인 대상 소득보장 효과 강화 측면에서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의 명확성 제고

-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가져야 할지 명확히 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보완 과제



## 보완과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 □ 현황

- 2021년 12월 현재, 퇴직연금 총 가입자 수는 684만 명으로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 1,196만 명의 53.3%
  - \* 2022년 국민연금 가입자 수 2,250만명 중 사업장 가입자 1,478만명, 2021년 국민연금 가입자수 2,235만명 중 사업장 가입자 1,458만명
- 2021년 12월 현재, 총 적립금은 295.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하였으며 사용자 납입금은 전년 대비 49.9조 원 증가
  - \* 2022년 말 국민연금 적립금 890조, 2021년 말 국민연금 적립금 949조
- 도입사업장 비율은 전체 대상 사업장(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대비 27.1%(153만 개소 중 42만 개소)이며 3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은 78.9%
  -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2022년 220만 개소, 2021년 214만 개소

### □ 문제점

-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 상대적 저조
  - \*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도입률은 하락,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4.0%, 10~29인 사업장 57.1%, 5~9인 사업장 33.1%, 5인 미만 사업장 10.6%
- 적립금 운용수익률 저조
  - 2021년 평균 수익률은 2%이며 최근 5년 및 10년간은 각각 1.96%, 2.39%로 1998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5.11%에 비해 낮음
- 낮은 연금 수령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 미흡
  - 2021년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397,270 계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4.3%에 불과하며 금액 기준으로 34.4%

\* 일시금 선택 시 평균 수령액은 1,615만 원, 연금 수령 시 평균 수령액(1억 8,858만 원)의 8.6%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
-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익률 제고를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며 퇴직연금의 연금 수급을 확대할 필요

# 부 록

부록 1: 국민연금제도 개요

부록 2: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구성

부록 3: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회의일지

부록 4: 용어집



## 부록1 : 국민연금제도 개요

### 1. 국민연금제도 연혁

#### □ 주요 제도연혁

- 1973. 12. 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구법 폐지)
-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1992.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1992.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 1995. 07. 01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 1998. 12. 31 재정안정화, 급여제도 등과 관련된 법 개정
- 1999. 04. 0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전국민 연금 실현)
-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 2003. 07.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2004. 04. 01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 2007. 07. 23 재정안정화, 급여제도 등과 관련된 법 개정
- 2008. 01. 01 완전노령연금(가입기간 20년 이상) 지급 개시
- 2009. 08. 07 국민연금과 4개 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사업 시행
- 2011. 04. 01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 전 등급 심사 개시
- 2012. 07. 01 두루누리 사업 시행
- 2014. 07. 25 기초연금 지급 개시

- 2015. 12. 23 노후준비지원법 제정 및 시행
- 2016. 08. 01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시행
- 2016. 11. 30 경력단절 여성 대상 추후납부 확대
- 2022. 07. 01.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2.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특징

### □ 전 국민 대상의 사회보험

- 노령, 사망, 장애로 인한 소득능력 감소 또는 상실에 대비한 사회보험
  - 근로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
- 전 국민을 한 제도에 포괄
  - 공무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국민 모두를 국민연금제도에 적용시킴으로써 위험분산 및 국민간 형평성 최대화
- 세대내,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
  - 급여산식을 통하여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를 꾀함
  - 초기 가입자에 대한 낮은 보험료를 적용을 통한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 달성

### □ 확정급여방식

- 가입기간에 따라 향후 수급할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제시
  - 단, 국민연금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두 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급여수준을 낮추어 왔음

### □ 재정방식과 재정안정장치

- 재정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도 도입 시부터 비교적 보험료율을 높게 적용하여 단기에 거대 기금을 적립하였고, 향후 장기간 적립금이 쌓임으로써 상당기간 부분적립상태를 유지
- 1998년 법개정으로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5년 마다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음

### 3.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 □ 제도의 적용대상과 가입현황

##### ○ 적용대상

- 국민연금 및 타공적연금 가입자나 수급자, 그들의 무소득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에게 적용
- 가입자는 당연가입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인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4종류가 있음
  -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당연가입대상이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임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 자의로 가입하는 자
  -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
- 가입자로서 소득활동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정되지 않음

##### ○ 가입현황(2022년 12월 말 현재)

- 전체 가입자는 22,497천 명이며, 사업장가입자 14,785천 명(65.7%), 지역가입자 6,845천 명(30.4%),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866천 명(3.9%)임
-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는 3,781천 명(55.2%), 납부예외자는 3,064천 명(44.8%)임

## □ 보험료징수방식과 징수 현황

### ○ 보험료징수방식

-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씩을 분담하고, 그 외의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며, 공단에서 주로 월별로 징수
- 2007년 법 개정 이전에는 표준소득월액 등급표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등급표가 폐지되고 소득에 보험료율을 직접 적용함

### ○ 징수현황(2022년 기준)

- 금액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당해 징수율은 97.8%이며, 사업장가입자 99.8%, 지역가입자 83.2%임
- 한편 2022년 12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2,828천 원이며, 사업장가입자 3,186천 원, 지역가입자 1,426천 원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의 55.2%에 불과함

## □ 부담수준과 급여수준

### ○ 부담수준

- 보험료율은 제도 도입 시부터 9%이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사업장가입자는 5년 마다 3%→6%→9%로 상향조정되었고, 지역가입자는 3%에서 출발하여 매년 1%p씩 올려 2005년부터는 9%로 고정

### ○ 급여수준

- 제도 도입 시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의 소득대체율 70%에서 1998년 말 법 개정을 통하여 60%로, 그리고 2007년 7월 법개정을 통하여 2008년 50%, 2009년부터 매년 0.5%p 삭감하여 2028년 40%가 되도록 변경하였음

□ 급여의 산정방식

-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합산액으로 구성
  - 기본연금액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가입기간에 비례
    - 이 때 가입기간은 순수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추납 및 일시금 반납기간 포함)을 말하며,
    - 납부예외기간이나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반영되지 않음

$$\text{기본연금액} = 1.275(A+B)(1+0.05n)$$

A: 연금수급직전 최근 3년간의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균등부분)

B: 가입자 개인의 전 가입기간의 평균표준소득월액(소득비례부분)

n: 20년 초과 가입년수

1.275: 평균소득자 기준 20년(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21.25%(42.5%)로 만들어 주는 계수

0.05: 가입기간 20년 초과 매 1년당 급여액 가산률

주: 2023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2.5%일 때 급여산식의 예시

-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정액급여임

□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지급액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후부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

\* 노령연금(조기)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56세), 1957-60년생 62세(57세), 1961-64년생 63세(58세), 1965-68년생 64세(59세), 1969년생 이후 65세(60세)

&lt;부록 표 1-1&gt; 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가입기간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을 10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1개월마다 5/1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月)=[(기본연금액×가입기간별 지급률*)÷12]-월감액금액** -2015.7.29.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年)=기본연금액×가입기간별 지급률*×연령별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가산)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최대 50%까지 감액)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을 차등적용(50%~10%감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생연도별 조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연령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55세 수급개시 기준: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분할연금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 다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라질 수 있음

## ○ 장애연금

-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100% 지급

<부록 표 1-2> 장애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수급요건	장애등급	급여수준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단,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 그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 만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되는 날의 다음 날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일시보상금)

○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자 또는 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부록 표 1-3> 유족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수급요건		급여수준	
사망일이 2016.11.30.전	사망일이 2016.11.30.이후	가입기간	연금액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 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 일시금 형태의 급여

-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반환일시금, 사망 일시금 등이 있음

&lt;부록 표 1-4&gt; 일시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종류	수급요건	급여수준
반환 일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li> <li>-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li> <li>-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li> </ul>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법정 이자 이자율 적용: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사망 일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li> </ul>	반환일시금 상당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 이내 단,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에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 수급자 현황

- 연금수급자는 2022년 말 기준으로 6,643천 명이고, 그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5,397천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81%임.

&lt;부록 표 1-5&gt; 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단위: 천 건, 십억 원)

구분		계	연금				일시금			
			소계	노령	장애	유족	소계	장애	반환	사망
'22	수급자	6,643	6,425	5,397	77	951	218	3	199	16
	금액	34,020	32,817	29,544	391	2,882	1,203	50	1,074	79
'21	수급자	6,070	5,864	4,894	78	892	206	3	189	14
	금액	29,137	28,081	25,083	385	2,612	1,056	50	941	66
'20	수급자	5,588	5,388	4,468	78	842	200	3	184	13
	금액	25,654	24,628	21,817	383	2,428	1,026	48	919	58
'19	수급자	5,163	4,961	4,090	78	793	202	3	187	12
	금액	22,764	21,712	19,069	379	2,264	1,053	49	953	51
'18	수급자	4,769	4,597	3,779	76	742	173	3	158	12
	금액	20,753	19,801	17,384	359	2,058	952	47	859	46

## 부록2 : 재정계산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직위)	비고
위원장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 교수	위촉직
정부 위원 (2)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당연직
	장기룡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 성창훈 ('22.11~'23.3)
민간 위원 (12)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위촉직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 ('23.8.31. 중도사퇴)
	박영석	서강대학교 경영학 교수	"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 교수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 교수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 ('23.8.31. 중도사퇴)
간사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 부록3 :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회의일지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 내용
1차 '22. 11.28	○ 논의안건 - 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 보고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운영계획(안)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 - 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추진방향, 위원회 구성·운영, 추진경과 및 추진일정(안) 등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운영계획(안) - 구성 및 기능, 운영 방식(안), 논의 과제(안), 운영 일정(안) 등
2차 '22. 12.9	○ 논의안건 - 재정계산위원회 논의과제 - 위원별 검토과제 배분 -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일정 -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 등	○ 재정계산위원회 논의과제(안) - 재정계산위원회 논의과제(예시), 논의과제 제안의견 ○ 위원별 검토과제 배분(안) - 위원별 검토과제 제출의견, 논의 필요사항 ○ 재정계산위원회 운영 일정(안) - 운영일정(안), 논의 필요사항 등 ○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 - 회의결과 요약본 공개시기, 상세회의록 등
3차 '22. 12.23	○ 논의안건 - 단일한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한 방안	○ 제5차 재정계산 미션 - 방향은 명확하고 장기 비전은 유연하게 제시, 장기적인 연금개혁 방안 마련 필요 ○ 국회 특위와 역할 분담 및 협력 - 법적 일정에 따라 운영 추진, 특위에서 구상하는 내용에 대한 공유 필요 ○ 이해관계자 의견 및 국민여론 수렴 - 국민에게 연금개혁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공론화하는 과정 중요 ○ 전문위원회와의 공조 - 위원회 간 구체적인 방안 등을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 유도 ○ 단일안 도출을 위한 노력 필요, 단일안 어려울 경우 소수의견 및 논거에 대한 기술도 필요 - 1~4차 보고서와 자료집 공유 및 중요안건 집중 논의 등
4차 '23. 1.6	○ 논의안건 - 국민연금의 장기적 운영 원칙 1 -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일정(안)	○ 재정계산위원회 수당 지급방식 논의 ○ 장기적 운영원칙은 노후소득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으로 정의 - 인구변화 등을 고려한 적합한 재정목표 설정 필요, 부과방식·지급수익 등을 고려한 적립배율과 공적연금 보장성 범위가 쟁점이라는 의견

<p>5차 '23. 2.3</p>	<p>○ 논의안건 - 국민연금의 장기적 운영 원칙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목표와 재정방식은 국민연금 보장성 확보라는 목적에 의해 선택되어야 함</li> <li>- 재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구체적인 제시 필요하다는 의견</li> <li>○ 재정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추계기간 100년으로 연장, 추계주기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검토와 급여성정성 확보를 위한 사적연금 강화 필요</li> <li>- 사적연금 역할 강화 및 추계기간 연장, 추계주기 축소에 대해서 여러 의견 존재</li> </ul>
<p>6차 '23. 2.10</p>	<p>○ 논의안건 - 국민기초연금 재구조화 및 기초연금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IS(보충적 소득보장제도)는 노후소득 보장 체계 이행기에 적합하며 제도 간 균형 및 재정적 측면에서 국민연금 강화보형이 바람직</li> <li>- 현재 제도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GIS가 도입되면 더욱 혼란스러워질 가능성 존재한다는 의견</li> <li>○ 다층체계 관점에서 급여 수준(보장성)과 비용부담(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국민기초연금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설정 필요</li> <li>-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 급여성정성 등에 대한 여러 의견 존재</li> </ul>
<p>7차 '23 2.10</p>	<p>○ 논의안건 -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과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 필요</li> <li>○ 국민·기초연금의 재구조화 등 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급여성정성 등 기초연금 관련 세부 문제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논의 의견</li> </ul>
<p>제8차 '23. 3.17</p>	<p>○ 논의안건 - 가입/수급연령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상한연령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성은 공감하나 고령층 근로자에 대한 고용 회피, 사각지대 확대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고려 필요</li> <li>- 정년연장, 노동시장 등과 함께 큰 틀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기여-수급 간 균형도 필요</li> <li>- 제도변화로 국민들 편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제시 필요</li> </ul> </li> <li>○ 연금수급연령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 노동시장의 질적 특성 및 앞으로의 10년 간 인구구조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 필요</li> <li>- 또한 보험료 인상폭,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여부 등에 따라 수급개시연령 연장 필요성과 연장 수준 등 검토 필요</li> </ul> </li> </ul>

<p>제9차 '23. 3.24</p>	<p>○ 논의안건 - 재정안정화와 기금운용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변수, 기초장기 재정균형의 실질적 정의와 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기여율 및 기금의 목표수익률 도출 필요</li> <li>-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금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여와 급여 간 균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존재</li> <li>-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 상황을 고려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기여에 대한 분석과 보험료를 상향 시 기금수익의 비중 제시 필요</li> <li>- 기금수익률이 미래의 경제 성장률을 앞설지 의문으로, 기금의 역할은 한정적이어야 함</li> <li>○ 기준포트폴리오 도입과 대체투자, 해외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체계 등 조직 개편 필요</li> <li>- 전문가 중심 구성에 대해 검토 필요</li> <li>- 별도 기금운용 조직을 구성해도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하기 어려움</li> </ul>
<p>제10차 '23. 4.7</p>	<p>○ 논의안건 - 노후소득보장 및 급여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의 적정성</li> <li>-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급성이 낮다는 의견 존재</li> <li>○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개선방안</li> <li>- 감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존</li> <li>○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li> <li>- 재정안정화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재정안정화와 크레딧 확대는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 있다는 의견 등 존재</li> <li>- 다만, 정책 효과 및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국고를 통한 사전지원 방식으로 변경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li> <li>○ 유족·장애연금 개선방안</li> <li>- 의제가입기간을 30년으로 높이는 것 적절, 유족연금의 재원을 조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제시</li> </ul>
<p>제11차 '23. 4.14</p>	<p>○ 논의안건 - 사각지대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각지대 개선 방향</li> <li>- 보험료 인상 시,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방안 고려 필요,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연금체계 관점에서 사각지대 논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 조정 및 국민연금 적용체계 개편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가입기간 10년 유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필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필요</li> <li>- N잡 활성화에 따른 시간제 근로자 등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필요</li> </ul> </li> <l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가입자 전환 문제 및 소득과약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고종사자는 동일 직종 내에서의 소득양극화를 고려할 필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약체계 확충도 병행 필요</li> <li>- 그 외 다양한 경제활동·근로형태를 고려한 가입체계도 고민 필요</li> </ul> </li> </ul>
<p>제12차 '23. 5.12</p>	<p>○ 논의안건 - 다층노후소득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층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세부적인 개혁안 마련 시, 노후소득 적정성, 재정 안정성,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기초보장 부담 확대 우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제도 간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li> <li>- 기초연금을 기초생보와 통합한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한다면, 보장수준, 선정기준,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필요</li> <li>-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준 공적 연금화의 필요성과 방안은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논의 필요</li> </ul> </li> </ul>
<p>제13차 '23. 5.26</p>	<p>○ 논의안건 - 재정안정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리적·사회경제적 접근의 명확한 구분 어려움, 미래세대 부담능력과 연금재정 부담방식은 면밀한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리적 접근으로 명명한 방식도 인구·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므로 사회경제적 계리접근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움</li> <li>-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이 향상되더라도 연금재정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 인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li> <li>- 보험료나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조정방안이 함께 제시될 필요, 재정안정화 방안 중 우선순위, 비중 등에 대한 정리 필요</li> </ul> </li> </ul>

<p>제14차 '23. 6.2</p>	<p>○ 논의안건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기금의 역할 - 재정안정화 방안</p>	<p>○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적립기금을 장기에 걸쳐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장기재정균형 달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기금의 역할 제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세대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보험료-기금-국고 등의 적정 역할 설정이 필요하며, 기금수익률의 불확실성도 고려 필요</li> </ul> <p>○ 연금재정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기금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등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나, 기금운용 방식 설정시 자산배분 등 관련 수치의 신뢰성 제고 필요</li> <li>- 투자수익의 사용 시기(장·단기)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 필요</li> </ul> <p>○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조치와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의 병행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li> </ul>
<p>15차 '23 6.9</p>	<p>○ 논의안건 -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원칙</p>	<p>○ 보고서 목차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는 서론 1장(20·30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미래의 연금), 본론 3장(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 원칙, 재정안정화 방안, 노후소득보장 방안), 결론 1장(정책 제언과 향후과제)으로 논의</li> </ul> <p>○ 국민연금 장기적 운영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재정목표는 70년 후인 2093년도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할 필요</li> </ul>
<p>16차 '23 6.16</p>	<p>○ 논의안건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p>	<p>○ 재정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93년 이후까지 기금이 유지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 모색</li> </ul> <p>○ 재정안정화 방안 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 18%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며 바람직한 안을 함께 제시 필요</li> <li>- 수용가능성을 감안하여 기금투자수익률 1% 상향, 수급연령 68세 조정을 전제한 보험료율 15%도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조건으로 보험료를 13% 추가제안</li> <li>○ 재정안정화 수단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가입연령을 높이는 방안 병행 필요</li> <li>- 제한적인 수준으로 적용이 필요하며, 노동 시장 개혁과 연계한 가입연령 상향과 함께 제시 필요</li> <li>-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행가능성을 감안하여 +1%p 이하로 설정 필요</li> <li>- 2093년 이후를 고려하여 국고를 사전에 10년에 걸쳐 조금씩 투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기투입은 이행가능성이 낮으므로, 2093년 이후의 재정안정을 위해 국고지원과 인구구조 논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제시하자는 의견</li> </ul> </li> <li>○ 펀처펀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를 인상분으로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여 기금소진 이후 재정안정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 제안</li> <li>- 펀처펀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 존재</li> </ul> </li> </ul>
<p>17차 '23 6.23</p>	<p>○ 논의안건 - 노후소득보장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연령 상한 조정) 2033년에 65세까지 상향되는 것이므로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제안</li> <li>-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제도 합리성 차원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li> <li>- (출산크레딧 확대) 현행 둘째 자녀부터 부여하는 방식에서 첫째 자녀부터 부여, 자녀당 12개월씩 최대 60개월까지 크레딧 부여 방안 제안</li> <li>- (군복무크레딧 확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인정 기간은 6개월에서 군복무 전 기간으로 확대 및 사전 지원방식으로 변경</li> <li>- (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에 집중하고, 실업크레딧은 보고서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li> <li>- (특수형태 근로자 가입 확대)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가입 유도를 위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지원에 준하는 방식으로 지원</li> <li>○ 급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대체율) 소득계층별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객관적인 수치를 포함시키는 방안 제안</li> <li>-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고령자 노동 유인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li> <li>-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개선) 이번 보고서 포함 여부에 대해 제외하자는 의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포함하자는 의견 등 제시</li> </ul> </li> </ul>
<p>18차 '23 7.7</p>	<p>○ 논의안건 - 재정계산보고서 리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수준) 기초연금 관련 내용은 국민-기초연금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수준으로 제시</li> <li>- (논의기구) 향후 기초연금의 구체적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li> </ul> </li> <li>○ 다층노후소득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 퇴직연금 현황 및 문제점과 함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 제시</li> <li>- (개인연금) 보고서에 개인연금은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li> <li>- (보고서 목차) '다층노후소득보장'을 퇴직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li> </ul> </li> <li>○ 소득보장수준 및 재정안정화 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보장) 계층별 소득보장 목표 설정은 자의적일 수 있으므로, 목표가 아닌 소득보장 수준을 예시로 포함하는 방안 검토</li> <li>- (재정효과 분석) 5차 재정추계 기금수익률 전망치를 전제로 수급개시연령 연장 효과를 분석하고, 이후 기금수익률 상향 효과 분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논의사항</li> <li>- (지급보장) 지급보장 법제화를 다루지 않더라도,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li> <li>- (보고서 목차)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두 축을 고려하여 '재정진단'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진단' 내용도 추가하자는 제안</li> </ul>
<p>제19차 '23. 7.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의안건</li> <li>- 재정계산보고서 리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 구성 관련 논의: (재정안정화 방안) 보험료율 인상 방안은 정합성 차원에서 9%, 12%, 15%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li> <li>- 소득대체를 인상을 제안할 경우 이에 부합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li> <li>- 수급개시연령 연장 제안에 대한 논거 필요</li> </ul>
<p>제20차 '23. 8.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의안건</li> <li>- 공청회 자료집 및 보고서(안)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안정화 관련</li> <li>- (재정진단) 재정수지전망에 보험료 수입, 급여지출, 수지적자 추가</li> <li>- (기금투자)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시,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는 내용에 연간 손실 확률 관련 서술을 삽입</li> <li>- (종합검토) 재정안정 방안을 제도변수(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상향) 관련 내용과 기금 수익률 제고 관련 내용을 구분하여 서술</li> <li>○ 소득대체율 관련</li> <li>- (주요의견) ▲소득대체율 '유지안'과 '인상안'에 다수/소수안 명시필요, ▲'유지안'은 재정안정화 파트로 이동시키자는 의견 등 제시</li> <li>- 다수/소수안 명시 여부에 대한 투표에 따라 다수안, 소수안 명기</li> </ul>
<p>제21차 '23. 8.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의안건</li> <li>- 공청회 자료집 및 보고서(안)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I. 노후소득보장 여건 관련</li> <li>- 노인 빈곤에 소득 여건과 자산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서술 삽입</li> <li>○ 보완과제. 퇴직연금 관련</li> <li>- 제도 현황 내 총적립금 관련 통계 등을 추가, 개선 사항을 개략적인 방향성 수준으로 제시하기로 한 기존 결정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대체율 관련</li> <li>- 20차에 이어 '다수·소수의견' 명기 여부를 재논의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함(소득대체 인상 주장 위원 1인, 표결 결과 인정 주장 위원 1인 퇴장)</li> <li>-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이 소득대체율 인상안과 제IV장 제1절의 완전삭제를 요구하여,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되 그간의 경과를 보고서에 기록하기로 결정</li> </ul>
제22차 '23. 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의안건</li> <li>- 보고서(안) 수정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대체율 관련</li> <li>- 소득대체율 인상과 유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기로 결정, 소득대체율 45%를 추가하고 GDP 대비 비율을 넣고 설명하기로 함</li> </ul>

## 부록4 : 용어집

**가입기간** 가입자가 자격유지기간(취득일~상실일의 전날)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월수를 의미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다.

**고용률** 생산인구 중에서 특정시점에 취업해 있는 인구의 비율이다.

**국민연금**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 가입자·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는 제도이다.

**군복무 크레딧** 2008. 1. 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 복무를 한 사람, 상근 예비역, 사회복지요원,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

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여 주는 제도이다.

**균등부분(A값)** 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산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다.

**기대여명(Life Expectancy)** 특정연령까지 생존한 사람들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잔여생존연수로, 한 인구의 사망수준 및 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임. 기대여명은 연령별 사망자수, 추계인구, 조사망률, 사망확률, 생존자수, 사망자수, 정지인구 등을 산출하여 정지인구의 전체 합에서 각각의 연령별 정지인구를 뺀 뒤 연산으로 계산한다.

**기본연금액**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가입자 전체의 소득(소득재분배 기능)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소득비례 기능) 및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A값), 소득비례부분(B값) 및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기초연금법 제52조 제3항의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다(2023년 기준연금액 323,180원)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이전의 제도로 상한액,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상관관계, 근로소득공제, 재산소득환산율 등에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직역연금 기준)에 적합한 자가 대상이다.

**노인빈곤율** 전체 인구가 아닌 전체 노인 인구 중 빈곤한 노인의 비율이다. 빈곤이란 우리나라 국민의 균등화 개인소득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 소득을 가진 상황을 의미한다.

**부과방식** 현 시점에서 지급되는 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본인이 기여한 사회보험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국민(근로세대)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재정방식. Pay-As-You-Go(PAYG) 방식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부과방식 비용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율이다.

**분할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받는 제도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

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만든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이다.

**소득대체율** 연금의 급여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총소득대체율이라고 하며, 통상 이를 소득대체율로 사용한다. 국민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까지 40%수준을 맞추도록 설계하였다.

**소득비례부분(B값)**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소득비례부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가입자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에 비례하여 차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연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수급권을 가진 자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별로 지급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수급권을 가진 자가 실제 급여를 청구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수급자'가 된다.

**유족연금**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나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이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때에는 60%가 지급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가입제도** 전업주부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미 소득자의 경우나 결혼 또는 다른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 노후를 대비해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이다.

**의제(擬制)가입기간** 국민연금의 유족 장애연금에서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시까지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적립배율(Reserve Ratio)** 연간총지출대비 연초적립기금의 비율이다.

**장애연금**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다. 소득 요건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에 따르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이며, 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5세 상향조정, 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55세)에 도달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감액금액을 제외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여부와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한다.

**출산크레딧**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한다.

**퇴직연금**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수지역연금(지역연금)**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이다.

**특수직종근로자**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입갱수당 지급자) 및 어선에  
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을 의미한다.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전  
체 보험료 고지기간의 3/5 이상)되면 일반가입자들과 달리 만 55세부터  
노령연금이 수령 가능하다. 이는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이다.